

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9월 2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10. 17) 상정
- 제13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10. 17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산지원과장 정 규 열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식물원 개원에 따라 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 관람요금을 현실화하고, 자연학습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시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 관리체계에 맞게 변경하는 등,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부천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의 관람료를 상향 조정함.
(안 별표)
- 자연학습장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중 현 실정에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4조제5호·제17조·제18조·제19조 제1항 제2호·제20조·제21조 및 별표 2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부천무역에 위탁 중인 시설의 관리 및 청결 상태가 매우 열악한바, 농산지원과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.</p>	<p>○ 관리 및 청결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시민들의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.</p>
<p>○ 관람료 인상 관련, 자연학습장 운영에 있어 경영상의 수지 개선 정도는?</p>	<p>○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자연 학습장의 건립 취지에 맞게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 운영하고자 함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호
의결 년월일	2006. 10. 19 (제131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9. 29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식물원 개원에 따라 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 관람요금을 현실화하고, 자연학습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시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 관리체계에 맞게 변경하는 등,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부천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의 관람료를 상향 조정함.(안 별표)
- 나. 자연학습장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중 현 실정에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4조제5호·제17조·제18조·제19조제1항제2호·제20조·제21조 및 별표 2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춘의동 372-1”을 “춘의동 381번지”로 한다.

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동물원·식물원·농경유물전시관·자연생태박물관 및 수목원 등
체험학습시설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휴관일) 자연학습장의 정기 및 임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1. 정기휴관일 : 1월1일, 추석날, 설날, 매주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
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)
2. 임시휴관일
 - 가.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
 - 나. 시설의 보수를 하는 경우
 - 다.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

라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1조중 “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”를 “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2조중 “별표 1과”를 “별표와”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농산지원과
입 안 자	담당과장	정규열
	담당팀장	김경숙
	담당자	윤희찬(320-3976)

[별표]

자연학습장 관람료(제12조관련)

구 분	자연생태박물관		부천식물원		자연생태박물관 + 부천식물원		비고
	개 인	단 체	개 인	단 체	개 인	단 체	
0~3세 어린이, 어르신(65세 이상)	무 료	-	무 료	-	무 료	-	
4~12세 이하 어린이	700	600	700	600	1,300	1,100	
중·고등학생 및 군인	1,000	800	1,000	800	1,800	1,400	
어 른	1,200	1,000	1,200	1,000	2,200	1,800	

- 단체 : 유아원·유치원의 경우 20인 이하도 단체 인솔일 때에는
단체 요금을 적용
- 군인 : 제복을 입은 사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</p> <p>제2조(위치) 자연학습장은 부천시 원미구 <u>춘의동 372-1</u>로 한다.</p> <p>제5조(시설) 시장은 자연학습장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 시 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연학 습의 기회를 제공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동·식물원·농업생활사(짚· 풀·농경유물 등)·자연학습관 (곤충 및 민물고기의 생태전 시관, 공룡화석관련 전시관 등)·대강당(예식장·영상홍보 실 등겸용)등 교양시설</p> <p>제6조(휴관일) 시장은 시설의 유 지·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</p> <p>제2조(위치) ----- -----<u>춘의동 381번지</u>-----.</p> <p>제5조(시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동물원·식물원·농경유물전 시관·자연생태박물관 및 수 목원 등 체험학습시설</p> <p>제6조(휴관일) 자연학습장의 정기 및 임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정기휴관일 : 1월1일, 추석날, 설날, 매주 월요일(다만, 월요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)</p> <p>2. 임시휴관일</p>

	<p>가. <u>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</u></p> <p>나. <u>시설의 보수를 하는 경우</u></p> <p>다. <u>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</u></p> <p>라. <u>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</u></p>
<p>제9조(해임)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9조(해임) -----</p> <p>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자연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<u>부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</u>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운영의 위탁) -----</p> <p>----- 「<u>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</u>」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2조(관람료) 시설물의 유지, 관리, 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며 관람료는 <u>별표 1</u>과 같이 한다.</p>	<p>제12조(관람료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별표와</u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3조(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)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관람거절이나 퇴장의 경우에는</p>	<p>제13조(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)</p> <p>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<p>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1. ~ 4. (생략)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관람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관람료의 감면) ----- 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4. (생략) 5. <u>단체 입장을 할 때. 다만, 20인 이상 이어야 한다.</u>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</p>
<p>제16조(사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사용제한)-----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3. (생략)</p>	<p>1. ~ 3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사용료) ①자연학습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</p>	<p><u><삭제></u></p>
<p>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
<p>③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	

④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 수입액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.

⑤관람료 징수를 위한 자연학습장 시설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사용료를 분할 징수할 수 있다.

제18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9조(허가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3. ~ 5 (생략)

제20조(사용료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〈삭제〉

제19조(허가의 취소)-----

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〈삭제〉

3. ~ 5 (현행과 같음)

〈삭제〉

<p>1.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 였을 때</p> <p>2.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 되었을 때</p> <p>3. 신청인이 사용 5일전에 계약 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</p> <p>제21조(사용중단 신고) 시설의 사 용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삭 제〉</p>
---	--